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3 발의연월일: 2021. 3. 24.

발 의 자:신현영·허종식·김회재

강민정 • 박 정 • 고민정

김주영 · 오영화 · 이용우

강선우 • 이용빈 • 박홍근

최종윤 • 민형배 • 이규민

유정주 · 김승원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월 26일 '요양병원, 요양시설 입원·입소자·종사자'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, 백신 접종 후 발열,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.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 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~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.

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 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 을 줄 수 있고,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 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,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

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. 또한 일용직노동자, 특수고용노동자, 영세자영업자 등과같이 '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'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"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"를 "격리되거나 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경우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"로, "유급휴가를"을 "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"로 한다.

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3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) ① 국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없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 라 입원 또는 <u>격리되는 경우</u>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제25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받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제60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 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-----또는 임시예방접종 을 받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관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유급 다. 휴가를-----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1조의3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) ① 국 가는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피보험자, 「산업재 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제1항 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유

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에 종사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범위 및 신청・지원 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